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 선 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10
----------	---------

발의연월일: 2020년 2월 일

발 의 자: 강선영, 경기문, 이종숙, 이의걸

최동철, 김동협, 정정희, 황영호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서구 거주 65세 이상 노인 중 와상 상태이거나 각종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조호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조호물품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인다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노인, 노인성 질병, 조호물품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다. 조호물품 지원요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 중단 사유 등 지원 절차 전반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제6조)

라.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 2) 「노인복지법」 제4조

나. 협조부서: 어르신복지과

다. 입법예고: 2020. 2. 예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와상 상태 또는 각종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에 처한 노인에게 조호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의 질병을 말한다.
2. “조호물품”이란 질병 노인들을 돌보는 물품으로서 노인의 신체 활동 지원에 쓰이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 복지용구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요건) 이 조례에 따른 조호물품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일 것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인정을 받은 사람 일 것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소견서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기저귀 교환, 피부관리, 욕창 관리 등 조호물품 필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5. 장기요양시설 입소를 비롯하여 정부 혹은 서울특별시의 지원

사업을 통한 조호물품 지원이 불가능 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한 노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조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당해 연도 예산과 조호물품 수요 및 선호도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신청) ① 조호물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양가족 또는 복지기관 담당 사회복지사,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 등 관계인이 대신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중단) 구청장은 조호물품을 지원 받는 노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호물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조호물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제3조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지원은 예산 확보 후 시행한다.